

신청 정보

신청번호	1AA-2505-1048329
신청일	2025-05-26 17:38:30
신청인 구분	단체
단체명	(주)코모엔터프라이즈
진행상황 통지방식	누리집(홈페이지)
진행결과 통지방식	누리집(홈페이지)
보안 설정	아니요

민원 신청 내용

민원종류	일반민원
제목	헬스기구 KC 인증 필요여부 관련
내용	아래의 운동기구가 KC인증상 헬스기구에 포함되는지, 포함된다면 어떤함 품목으로 신청을 해야하는 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첨부 파일	제품사진과 구동장치의 사진 첨부드립니다. strengtherg_movement_seated_row.jpeg 1748247042349.png 1748247052989.png 1748247078019.png 1748247100147.png

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인증본부 KC인증팀)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2505-0980127
접수일	2025-05-26 18:03:21
담당자(연락처)	문수경 (02-2102-2628)
처리에정일	2025-06-05 23:59:59

답변 내용

통지일
처리결과
(답변내용)

2025-06-05 13:18:39

1.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인 헬스기구의 해당 여부에 관련된 것으로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관련규정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생활용품”이란 공업적으로 생산된 물품으로서 별도의 가공(단순한 조립은 제외한다) 없이 소비자의 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나 그 부분품 또는 부속품(전기용품은 제외한다)을 말하며 대상품목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3 ~ 별표7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안전관리대상제품의 범위) 제4항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에 따라“헬스기구*”품목은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에 해당되며 안전기준 부속서에 아래와 같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 헬스기구 : 가정 및 공공장소(스포츠센터, 교육기관, 호텔 등)에서 이용자의 체력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고안된 고정식 운동기구를 말한다. 대표적인 헬스기구로는 고정식 운동기구, 벤치 프레스, 러닝머신, 고정식 자전거, 스텝퍼, 로잉머신, 운동용 슬라이더 등을 들 수 있다. 다만, 어린이가 이용할 목적으로 고안된 것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 정의(제7부 로잉머신) : 로잉머신은 노를 젓는 동작을 실현하기 위하여 앉는 자리를 이동시키는 고정식 체력훈련 장비

* 헬스기구 안전기준(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45) 다운로드 방법: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kats.go.kr) → 정책 → 제품안전 → 생활용품 → 안전확인 →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 → 헬스기구 (분야: 생활)

나. 검토의견

○ 위“가. 관련규정”에서 안내해 드린 것과 같이 헬스기구란 가정 및 공공장소(스포츠센터, 교육기관, 호텔 등)에서 이용자의 체력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고안된 고정식 운동기구를 말하며 대표적인 헬스기구로는 고정식 운동기구, 벤치 프레스, 러닝머신, 고정식 자전거, 스텝퍼, 로잉 머신, 운동용 슬라이더 등을 들 수 있고 어린이가 이용할 목적으로 고안된 것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해당 안전기준(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45 - 헬스기구(제7부 로잉머신))에는 로잉머신은 노를 젓는 동작을 실현하기 위하여 앉는 자리를 이동시키는 고정식 체력훈련 장비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 문의하신 제품의 경우 사진만 제공받아 명확한 사용방법을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판별에 어려움이 있으나 노를 젓는 동작을 실현하기 위한 고정식 체력훈련 장비로 볼 수 있으나 앉는 자리를 이동시키는 장비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헬스기구(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 안전기준 부속서 45)에 규정되어 있는 로잉머신의 정의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또한, 장비 본체가 바닥에 고정되어 있는 기구이나 구동방식이 와이어 로프식, 벨트식, 유압식, 체인방식 및 전동방식 중 어느 방식에도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인 헬스기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KC 인증팀 문수경 책임(02-2102-2628, msk0306@kcl.re.kr)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